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
법령·민원 사례집 (1)



2016



I. 도로교통법 일반

1 도로교통법 일반

1 도로교통법의 목적

○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도로교통법」 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로 차마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하여 교통혼잡 완화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예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와 교통 그리고 법의 합성어로 도로가 아닌 곳은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 교통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에 해당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의 제정목적이 도로상의 위험과 장애제거 및 원활한 소통확보에 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하천, 호수, 항만 등의 해상교통은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비록 육상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철도, 궤도, 삭도 등도 “도로에서 사용되는 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통과 관련”이 없는 위험과 장애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교통이란 무엇일까? 교통은 한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까지 장소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적 이동의 의미로써 교통을 의미한다. 이용 교통기관에 따라 철도 교통, 자동차 교통 등으로 불리고 있다.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의 의미는 도로상에서 장소적 이동으로 보행이나 차마의 통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둘째, 거리저항을 극복하는 이동이다. 건물 내 좁은 장소의 공간적 이동이나, 대화로써 의사전달 또한 정보의 이동임은 틀림없으나 이를 교통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리를 의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저항을 느끼는 경우에 비로소 교통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통은 체계적인 교통기관의 이동을 의미한다. 길 없는 산야를 돌아다니거나 유수 또는 바람에 의한 토사의 운반도 인간, 화물 및 정보의 거리저항을 극복하는 공

간적 이동이지만 어느 누구도 교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체계적인 교통기관이나 시설에 의한 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교통은 반복현상을 갖는 이동현상이다. 거리저항을 극복하고 고도의 체계적인 기관에 의하여 발사되는 로켓을 교통이라 하지 않는 것은 반복성을 갖는 공간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이 도로상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면, 인간, 화물 등의 장소적 이동에 대하여 계속·반복성을 가지고, 거리저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정광정, 도로교통법규론, 2007)

2 연혁

○ 「도로교통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로써 공포되어 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에 관한 일반법이다. 이 법의 시행 전까지는 朝鮮道路取締規則, 朝鮮自動車取締規則 중 제4장, 제5장 기타 위법에 저촉되는 규정, 조선자동차취체시행세칙, 諸車·徒步者의 통행규칙, 택시업취체령 및 전차취체규칙을 폐지하고 이들에 갈음하여 탄생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자동차의 급증, 보급, 면허인구의 증가에 따른 도로교통사정의 현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규칙의 변경·개정이 필요했고, 또 규칙 또는 시행세칙에 위임되어 있던 것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따라 법률정비가 이루어 졌다.

이 법은 단순히 경찰단속법규가 아니고 모든 국민의 교통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도로교통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朝鮮道路取締規則을 「도로교통법」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또 본 목적이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함을 규정하였다. 다만 제정 당시에는 안전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을 뿐, 자동차의 사용목적인 원활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채 시행되었다. 그러나 1970년 8월 12일 3차 개정에서 비로소 교통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제정 당시의 법은 전문 80조로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였고, 현행 「도로교통법」과 비교해도,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제외하고 커다란 차이가 없다.(정광정, 도로교통법규론, 2007)

3 주·정차 위반 단속 변천사

① 용어 : 법 제정된 '62년 정거(停車)·주거(駐車) ⇨ '85년 정차·주차로 변경

-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이래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주차'와 '정차' 개념의 변화다.
- 법이 제정되었을 때에 지금의 주·정차는 '정거(停車)와 주거(駐車)'로 명명되었다. 의미는 현재 정차(停車), 주차(駐車)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승용차보다 인력거, 우마차 등이 많았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시행일	용 어	정 의
'62.1.20. (제정)	주거(駐車)	- 제거(諸車)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기타의 사유로써 계속적으로 정지하는 것 또는 당해 제거의 운전자가 그 거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거(停車)	- 제거(諸車)가 정지하는 것으로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거 이외의 것을 말한다.
'85.2.5.	주차(駐車)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停車)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06.6.1.	주차(駐車)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停車)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11.12.9. ~ (현행)	주차(駐車)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停車)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 정차·주차 위반의 대상이 되는 차를 일컫는 용어가 처음에는 모든 차라는 의미로 '제거(諸車)'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1985년 '차(車)'로 변경됐다.
- 당시 법에 제거(諸車)는 '인력, 축력, 기타 동력에 의하여 도로상에서 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1985년 이후 차(車)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주로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차'로 범위가 변경됐다.

- 1960년대 '제거'를 인력, 축력, 기타의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등으로 정의한 것을 보아 당시만 해도 사람이나 가축이 수레 등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62.01.20.(제정)		'16.02.12.(시행)	
거마(車馬)		차마(車馬)	
우마(牛馬)	제거(諸車) (주·정거 위반)	차(車) (주·정차 위반)	우마(牛馬)
- 교통운수에 변역하는 가축	- 인력, 축력 기타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상에서 운전되는 것 - 궤도거 또는 소아거 이외의 것	- 자동차 - 건설기계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 -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	-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

< 1962년 제거(諸車)와 2016년 차(車) 비교 >

- 198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정차'와 '주차'로 바뀌어 불리게 됐으나 2006년 또 한 번 개정된 법과 비교하면 정의가 조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 1985년 「도로교통법」에서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정지해 있는 상태를 주차로 보았으나, 2006년 개정된 이후에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등 차를 계속 정지 상태로 두는 것을 주차로 정의하고 있다.
- 이는 정차 또는 주차에 있어 '운전자'를 행위의 주체로, '차'는 객체로 보고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② 단속 주체 : 경찰이 전담하다가 '77년 교통순시원, '90년 시 공무원 투입

- 주·정차 위반 단속은 1990년 이전까지는 경찰공무원이 전담해 오다가 1990년 11월부터 자치구 공무원이 투입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2001년 6월부터 시 공무원도 단속업무를 하기 시작했다.

- 1977년 1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약 20년 동안은 교통안전지도를 담당하는 '교통순시원' 제도도 있었다.
 - '교통순시원' 제도는 당시 갈수록 늘어나는 차로 인해 교통경찰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혼잡이 가중되자 이를 해결하고자 도입했으며, 시 공무원 신분으로 경찰서에 배치돼 보행·운전자 안전 확보, 주·정차 단속, 교통안전지도 업무 등을 담당했다.
 - 교통순시원은 만 25~35세 사이로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통과해야만 했으며 1979년에는 여성 교통순시원 30명을 선발해 보도나 통학로 등에 투입, 노인·어린이 보행안전을 지도하는데 활용하기도 했다.
- 1988년 1~2월에는 겨울방학 중인 대학생 600여 명을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투입하기도 했다.
 - 이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각 구마다 30~35명 씩 배치되어 불법 주·정차 계도와 고발하는 업무를 했으며,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 1990년에는 여성 주차단속요원 360여 명을 채용해 현장에 투입한 첫 날, 3만1천 건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이듬해 1천명 선으로 대거 늘려 주·정차 질서 확립을 강화해 나갔다.
- 2004년부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속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③ **채증 : 한 때 '증인' 이용하기도... 단속장비 향상되면서 '03년 증인 제도 사라져**

- 지금은 무인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있지만 한 때는 주·정차 위반사항 채증을 위해 사진과 함께 '증인'을 이용했던 시기도 있었다.
- 1973년 4월 범칙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운전석 앞 유리창에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부착하는 '서면 통고' 즉, '스티커'가 발부되기 시작했으며 이 때 상가 등 인근 주민으로부터 증인 협조를 받기도 했다.
- 1990년부터 자치구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게 되면서 과태료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3년부터는 증인에 의한 채증이 사라지게 됐는데 이는 단속 장비 기능이 향상돼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사진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 현행 '스티커'의 명칭(1990년 11월 2일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 표지' ⇨ 1997년 12월 6일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로 변경)

④ **벌금 : 법 제정 당시 벌금 5만원(現5천원) 이하 ⇨ 현재 범칙금 또는 과태료 5만원 이하**

-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 주정차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졌으며, 8년 뒤부터는 10만원 이하로 처분 강도가 대폭 강화됐다.
- 법 제정 당시 5만환은 지금의 5천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962년 통화개혁이 단행되면서 환은 '원'으로 바뀌었다.

※ 우리나라 화폐개혁(3차례 통화조치)

- 1950.9.15부터 1951.4.30까지 4차에 걸쳐 조선은행권과 한국은행권을 무제한 등가교환(等價交換)
- 1953.2.17부터 통화단위를 100분의 1로 절하하고 화폐호칭을 '원(圓)'에서 '환(圓)'으로 변경
- 1962.6.10부터 통화단위를 10분의 1로 절하하고 화폐호칭을 '환(圓)'에서 '원(圓)'으로 변경

- 1973년부터 6년 간 범칙금이 3번이나 인상됐다. 1979년 이후 10여 년 동안 범칙금 3천원 ~ 1만원이 부과되었으며, 1990년 자치구 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에 투입되면서 과태료 제도를 도입, 1995년 4만원(승용자동차)으로 오른 금액이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다.
- 특히 2011년 1월부터는 특례법이 도입되어 08시~20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일반 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시행시기	형 별	범 칙 금	과 태 료
1962.01	5만환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1979.05	5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범칙행위)	(1979.08) - 정차위반 3,000원~5,000원 - 주차위반 5,000원~10,000원 - 주·정차방법위반 3,000원~10,000원	
1990.11		(1992.03) - 정차위반 7,000원~30,000원 - 주차위반 3,000원~30,000원 - 주·정차방법위반 5,000원~30,000원	(1990.11) 5만원이하 - 승합차 4만원 - 승용차 3만원 - 화물1.5톤이상 4만원 - 화물1.5톤미만 3만원
1995.02	1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범칙행위)	(1995.03) - 승합차 5만원 - 승용차 4만원 - 이륜차 3만원 - 자전거 2만원	(1995.03) 5만원이하 - 승합차 5만원 - 승용차 4만원
2001.12	2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범칙행위)	(2002.07) - 승합차 5만원 - 승용차 4만원 - 이륜차 3만원 - 자전거 2만원	(2002.07) 20만원이하 - 승합차 5만원 - 승용차 4만원
2011.01			어린이보호구역 특례 - 오전8시~오후8시 -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

⑤ 주·정차 위반문제 심화돼 '70년부터 견인...한꺼번에 1백 여 대 견인되는 해프닝도

- '견인'은 1970년부터 시행되었고, '70년대 이후부터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반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 주·정차 위반이 매우 심각한 교통문제로 떠오르면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 즉시 견인하여 견인료와 벌금을 동시에 물렸다.
- 1992년, 프로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 잠실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이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 100여 대가 한꺼번에 잠실견인차량보관소로 옮겨지는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다.

2 도로의 개념

1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1) 의의

-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이다(법 제2조제1호).

2) 의미

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곳

-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여된 곳으로, 과거에 도로로 제공되었으나 현재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곳이 아니거나, 또는 현재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면 장래에 도로로 제공될 것이 예정되었다 해도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로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과거에 차량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던 광장이었으나 현재에는 물리적 구조물, 즉 담이나 울타리 등을 사용하여 특정인에게 제공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하여 불특정인에게 제공될 도로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도로로 볼 수 없을 것이다.(정광정, 도로교통법규론, 2007)
-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운전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이용하는 곳이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운전자의 운전 장소가 공개성(公開性)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인들 또는 특정인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여기서 말하는 도로가 될 수 없다. 다만 여기서의 공개성이란 어느 누구라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무제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용의 제한이 있더라도 불특정한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라면 공개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통행로가 어느 정도 공개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는 당해 통로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관리의사와 현실적인 관리 정도 등이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지고 있느냐 하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이용 상태가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관리자의 관리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하더라도 이용자에게

게 사실상 통로의 자유로운 이용을 묵인하고 있다면 당해 장소의 도로성(道路性)이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방극봉, 道路交通法上 '道路'의 意味, 법제처, 2000)

② 현실적(現實的)인 통행로(通行路)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당해 운전 장소가 현실적으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한다. '현실적(現實的)'인 통행로일 것이 요구되므로 물리적(物理的)으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통행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용이 희소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통행로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는 달리 운전자의 운전 장소가 하천부지나 공터 또는 조성되고 있는 도로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도로로서의 물리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분이 현실적으로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통행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방극봉, 道路交通法上 '道路'의 意味, 법제처, 2000)

③ 통행로(通行路)로서 계속적(繼續的)·반복적(反復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

- 당해 장소가 현실적인 통행로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도로로 평가될 수 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설된 통행로라면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통행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된 통행로라면 경우에 따라 도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방극봉, 道路交通法上 '道路'의 意味, 법제처, 2000)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장소

-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특정인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하고,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도로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 도로의 형태성은 중요하지 않고, ㉡ 도로로써 현재 이용될 것을 요구하는 현재성, ㉢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로써 공개성, ㉣ 아울러 통행이 보장된 통행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정광정, 도로교통법규론, 2007)

2 관련 판례

1) 주택가 골목길

- 주택가 골목길은 대개의 경우 일반교통을 위한 통행로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주택가의 골목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방극봉, 道路交通法上 ‘道路’의 意味, 2000, 법제처)

① 대구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고단7397 판결

【판시사항】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대구 서구 ○○동 소재 ○○○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동 ○○ 소재 피고인의 집 앞까지의 골목길은 사유지로서, ...(중략)...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던 위 골목길은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는 ○○○빌라가, 왼쪽에는 ○○빌라가 있으며, ○○○빌라를 지나면서 길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 오른쪽 끝부분에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사실, 위 골목길에는 위 빌라들 외에 화신빌라, 낙원빌라 등 주택들이 접하여 있는 사실, 위 ○○○빌라에 거주하던 ○○○ 등 주민들은 이 사건 무렵 위○○○빌라 앞 길 위에 시멘트 공사를 한 후 다른 차량들이 다닐 것을 염려하여 그 위에 차단시설을 해 놓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위 골목길이 특정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행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되어 있다면, 이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로 봄이 타당하다.

②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판시사항】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서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다시 일렬주차하기 위하여 약 1m 정도 전·후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운전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 등과 같은 곳도 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고, 또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를 위한 것이라거나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

2)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통로

- 아파트단지 내의 통로 측면에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주차장에서 운전이 이루어진 경우, 먼저 당해 장소가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차구획선 내부가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되면 「도로교통법」보다 「주차장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 때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파트단지 내의 통로에서 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파트단지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아래의 판례에서 보듯이 아파트단지내 통로가 일반교통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되어 있다면 이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면에 아파트단지가 외부로부터의 자유로운 출입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관리자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통행로가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이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방극봉, 道路交通法上 ‘道路’의 意味, 2000, 법제처)

①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판시사항】

[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형태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부분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②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판시사항】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의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시켜 준 자신의 승용차를 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위 노상주차장으로부터 위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까지 40m 내지 50m 가량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는 위 아파트 구내에 위치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판시사항】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지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3)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터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하겠으나, 공터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공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쇠말뚝과 쇠줄로 통제공간을 표시한 시설을 갖추고 또한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방극봉, 道路交通法上 '道路'의 意味, 2000, 법제처)

① 헌법재판소 1996. 10. 4. 95헌마318

【판시사항】

막혀져 있는 공터로서 그 한쪽면에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이 가능한 한쪽면에도 말뚝을 박고 쇠줄로 출입차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위 가구점이나 여관 등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사고지점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지점은 "루벤스"가구점 건물(뒤쪽), 약산장여관 건물(뒤쪽)등으로 막혀져 있는 공터로서 그 한쪽면에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이 가능한 한쪽면에도 말뚝을 박고 쇠줄로 출입차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위 가구점이나 여관 등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가 아님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도 보기 어려워서 이 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공터를 출입하는 차량들을 위한 특별한 관리인이 있거나 주차요금을 받는 등으로 통제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처럼 위 가구점이나 여관을 출입하는 자가 아닌 사람도 위 쇠줄을 걷고 일시적으로 그 곳에 주차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말뚝을 박고 쇠줄을 쳐서 출입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이 공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사고지점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②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3046 판결

【판시사항】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여관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通行할 수 있는通行 장소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판시 평창장여관 앞 공터는 위 여관과 함께 붙어 있는 인근의 소규모 상가를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여관 건물과 인근상가 건물 및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이 곳을 지나 자유로이通行할 수 있는通行장소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공터를 가리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판시사항】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通行할 수 있는通行 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판시 B주점 옆 공터는 위 주점과 그 옆에 함께 붙어 있는 카페주점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B주점 벽에 잇대어 벽돌담이 쳐져 있어, 일반 공중이나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 자유로이通行할 수 있는通行장소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공터를 가리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공터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학교 구내

- 학교 구내의通行로의 경우, 그 설치 목적이 일반교통의 사용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교직원과 재학생 또는 기타 학교에 용무가 있는 특정인에게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학교 구내의通行로 양 끝 또는 어느 한 끝이 외부의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일체로서 도로를 형성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학교 운영자가 일반교통에의 사용을 묵인하고 있다면 이 때의通行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방극봉, 道路交通法上 ‘道路’의 意味, 2000, 법제처)

①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986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특정된 장소인 아파트단지과 대학구내 통행로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특정된 장소인 ‘청화아파트 단지’와 ‘서울정수기능대학’이 도로법상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현장 사진을 포함한 수사보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비록 아파트단지 또는 대학구내의 통행로이기는 하지만 그 일부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특히 위 아파트단지의 정문에서 후문을 통하여 다른 도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위 아파트단지 내 ‘청화상가’ 건물 안에 식당 및 학원 등이 모여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 대하여 아파트 경비원들이 별다른 통제를 하지도 않고, 정수기능대학의 경우에도 심야시간에만 정문을 닫고 그 외에는 항상 개방하기 때문에 별다른 통제 없이 누구나 차량으로 통행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검사가 추가입증을 위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②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학 구내의 길인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육기관인 성균관대학 구내에 있는 길로서 특히 그 곳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성균관대학교는 담으로 둘러 쌓여있어 정·후문의 출입구 이외에는 외부로부터의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대학 구내에는 대학교에서 설치한 도로가 있으나 구내 공간이 비좁아 정숙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정·후문에서 수위 및 주차관리 근로학생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교직원외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통제하면서, 다만 교직원과 학교업무에 용무가 있는 자들의 차량만으로 용무를 확인하여 운전면허증을 수위실에 보관시킨 후 출입증을 교부하여 이를 부착한 상태로 출입 및 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용무가 없는 일반인이나 중·고등학생의 보행출입도 통제하고 있으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 등에 의뢰한 바 없이 순찰하는 수위 등이 자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학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

5)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37381 판결

【판시사항】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위와 같은 구 주택법령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앞에서 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법 내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구 주택법의 위 규정들에서 설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 지는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6) 건물 앞 광장(廣場)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77 판결

【판시사항】

시청 내 광장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 도로법 제2조 제19호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 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의 도로라 할 것이고, 위 장소가 도로인 이상 그 곳에서 운전한 것은 위 법 제2조 제19호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에 해당된다.

7) 빌딩 주차장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8047 판결

【판시사항】

빌딩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장소인 피어선 빌딩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도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8) 나이트클럽 주차장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판시사항】

나이트클럽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주차장은 나이트클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9)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293 판결

【판시사항】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 가스충전 등의 용무가 있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스충전소 시설물의 일부로 그 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10)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판시사항】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피고인이 2008. 9. 16. 16:15경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층 5A번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카니발 밴 차량을 40분 가량 세워두고 호객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버스의 교통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카니발 밴 차량을 40분 가량 주차한 장소는 위 여객터미널 도로 중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로서 일반 차량들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주차한 장소의 옆 차로를 통하여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차행위로 인하여 공항리무진 버스가 출발할 때 후진을 하여 차로를 바꾸어 진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는 하였지만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불법 주차행위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속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주차 및 정차

1 주차 & 정차

1) 의의

- 주차나 정차나 의 문제는 「도로교통법」 상의 주차와 정차를 구분하는 데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주차와 정차 모두를 금지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정차는 허용되지만 주차가 금지된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2) 정의

- ①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24호).
- ②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법 제2조제25호).

3) 주차와 정차의 구별 실의

- 정차위반이다. 주차위반이다. 단속자와 피단속자 간의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주차에 대한 정의에 “...기타의 사유로 계속 정지하거나...” 및 “...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의 해석과 정차에 대한 정의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라는 규정에 연유되고 있다. 즉, 주차가 현행법상 “5분을 초과하여 정지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없고, 단지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만을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이란 어느 정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정지시간뿐 아니라 계속하여 정지하고자 하는 의사도 판단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주차, 정차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정지시간의 장단은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차의 의사로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차로부터 거리가 가깝고 먼 것에 관계없이 모두 주차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정차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이라는 문구에서 5분이라는 시간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5분을 초과해야 주차가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용어정의 ‘주차’에 “5분이라는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차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유추해석한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차와 정차의 구분은 시간적 개념을 초월하여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생활필수품을 신고 행상을 하는 사람이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 내에 그 상품을 팔기 위하여 정지한 경우에는 주차로 보아야 함이 좋은 예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5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라면 정차에 해당되겠지만, 5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해도 그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주차에 해당될 것이다. 예컨대, 불러 봐도 나타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상태는 사회통념상 즉시 운전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판례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즉,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와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정광정, 도로교통법규론 재구성, 2007)

4)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

【판결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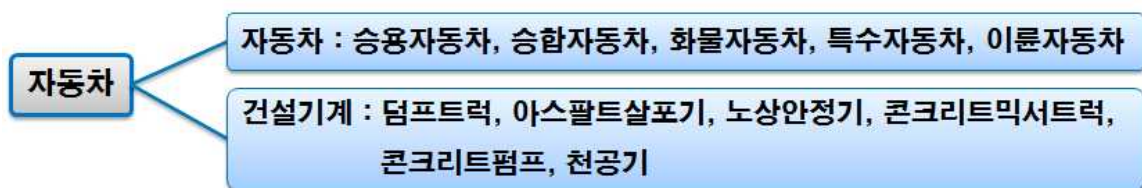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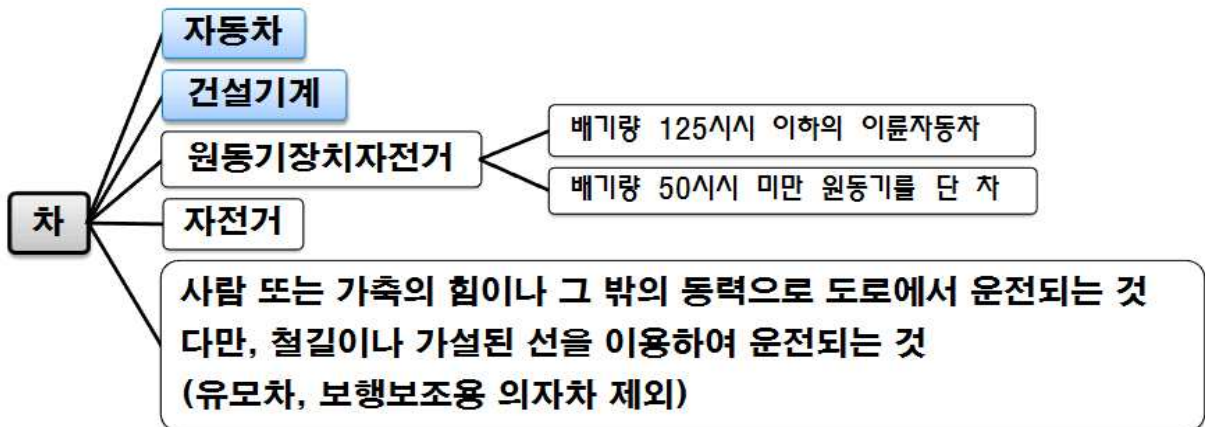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

2 주 · 정차 위반의 요건

1)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이어야 한다.(법 제2조제1호)

-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
- ②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③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④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법 제2조 제17호 및 제18호)



3) 위법한 상태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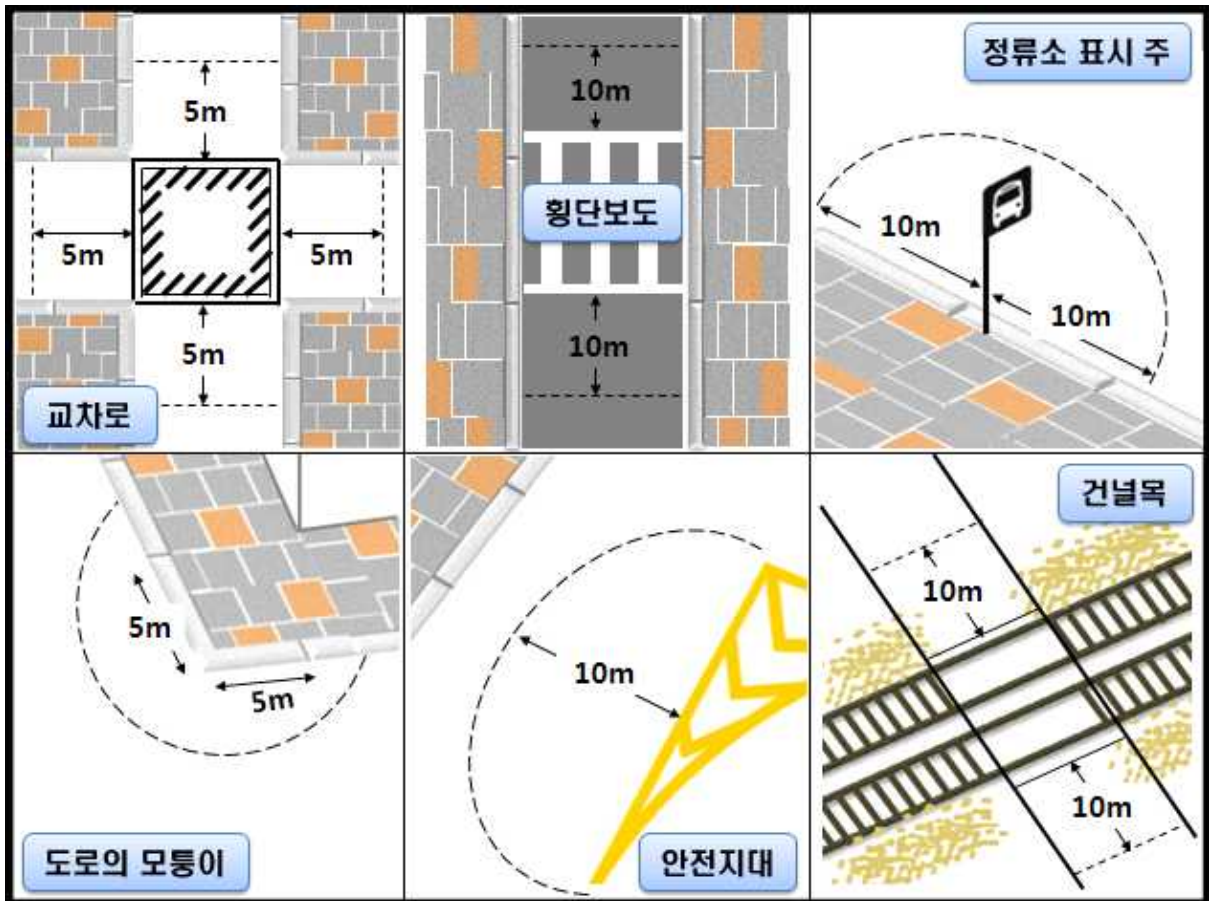
- 위법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차 또는 정차의 허용장소 이외에서의 도로상 정지 상태이거나 그 방법을 위반한 상태를 가리킨다.

3 주 · 정차 위반의 단속대상

1)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 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⑥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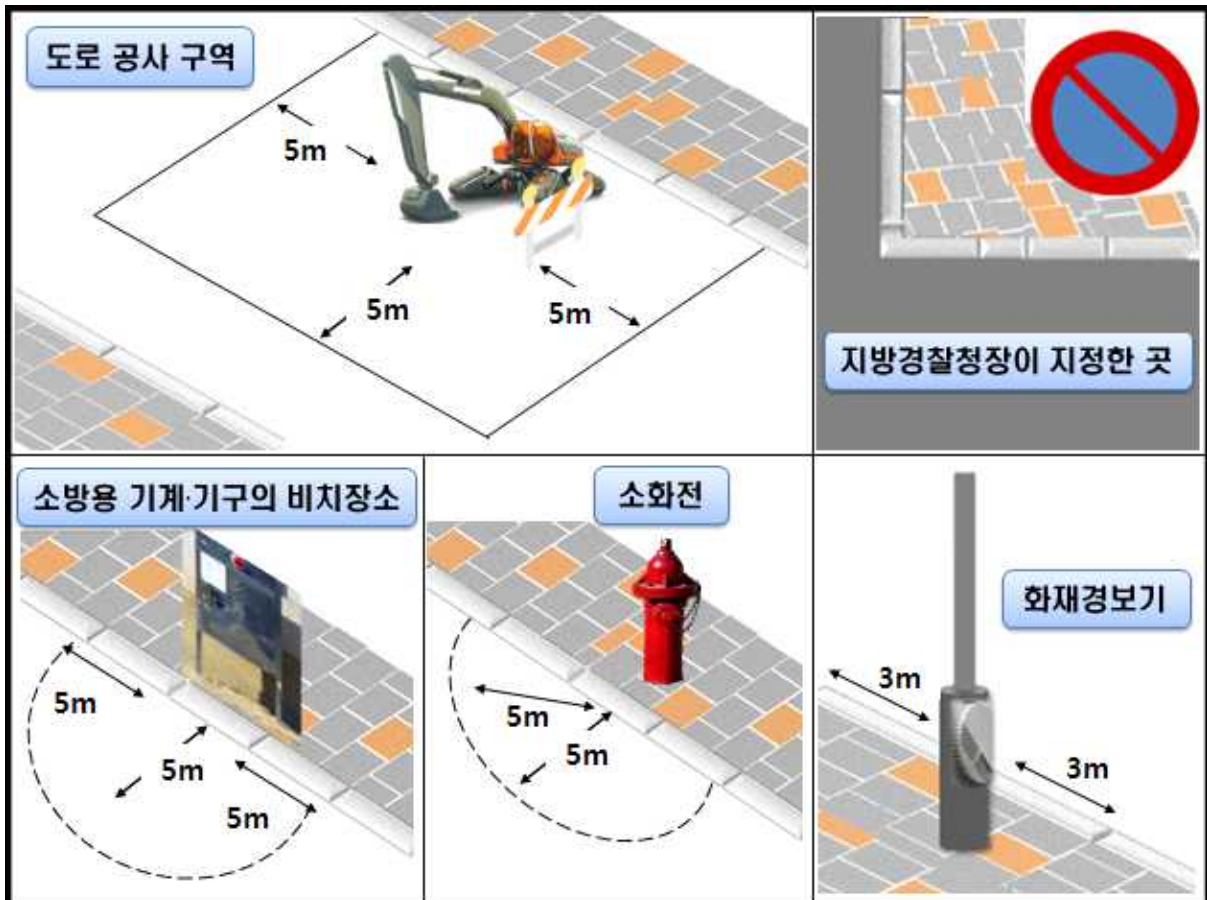
정차 및 주차의 금지



2)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③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방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④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의 장소



3)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①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② 구체적인 방법(시행령 제11조)
 -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 ㉠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 ㉢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4 차량 불법시위 관련

1 차량 불법시위 관련 적용 법규(경찰공무원)

1) 도로점거·저속운행·고의 불법주차 시

- 일반교통방해죄
 -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립요건
 - 주체 : 단체에 소속되거나 2인 이상 다수인에 포함되는 위반 운전자
 - 행위 : 도로상의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할 때
 - 주요 사례
 - ㉠ 도로점거 : 차로를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통케 한 경우
 - ㉡ 저속운행 : 도로상에서 차로를 이용 집단 저속 운행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장애를 준 경우
 - ㉢ 불법주차 : 고의로 서행·정차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한 경우 또는 차량을 도로에 놓고 도주한 경우
- 조치방법
 - 준법운행 유도 ⇨ 경고조치(3회 이상) ⇨ 현장 불법행위 채증 ⇨ 경비·수사기능과 협조 연행 ⇨ 형사기능 인계(형사처벌 및 면허증 회수) ⇨ 송치 후 면허증과 함께 교통기능에 통보
 - 자동차등을 이용 교통을 방해하여 일반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로 입건된 운전자는 면허취소 처분

2) 주·정차 금지위반 및 방법 위반 시

- 「도로교통법」 제35조
 -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정차금지 또는 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 성립요건

· 주체 : 단체에 소속되거나 2인 이상 다수인에 포함된 위반 운전자

· 행위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 규정에 위반하여 교통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 정도로 교통 방해

㉡ 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신호 또는 지시(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조치방법

· 준법운행 유도 ⇨ 불응 시 면허정지처분 경고조치 ⇨ 현장 불법행위 채증 ⇨ 운전자 통고 처분 및 면허증 회수(스티커 결재란 상단백색 여백에 “시위 관련 통고처분”임을 반드시 명기) ⇨ 불응 시 즉심회부

(신임경찰교육교재 교통실무 재구성, 2015, 중앙경찰학교)

2 차량 불법시위 관련 적용 법규(시·군공무원)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금지 및 제재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주·정차 금지지역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여 교통에 위협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은 ㉠ 주차변경 또는 차량이동을 명할 수 있고, ㉡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직접 주차변경 또는 차량이동(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2) 시위자의 불법주차에 대한 제재 여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은 규율의 목적과 대상이 다름.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집회나 시위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되어 제재가 가능함.

- 시위를 하기 위해 특정 장소로 자가용을 운전해온 자가 주·정차 금지지역에 차량을 불법 주차한 채로 시위를 하였다면, 시위행위가 적법함은 별개로 하고 불법주차행위 자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됨. 따라서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공무원은 해당 차량에 대하여 이동요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견인도 가능함.

-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스피커와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시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님.

(법률자문 검토의견 요약, 2015,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3 차량 불법시위 관련 판례

1) 관련 판례

①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판시사항】

집회 또는 시위가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판결요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서울중앙지법 2006. 1. 11. 선고 2001노1474 판결

【판시사항】

집회 및 시위가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판결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의 각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해 적법한 옥외집회 신고를 마치고 그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한 집회나 시위의 경우 그로 인해 교통의 소통에 장애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아울러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집회나 시위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보호 필요성과 이러한 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일반공중의 교통권 등의 침해의 정도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실제로 진행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위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함으로써 교통 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는 적법한 집회의 자유의 범위를 초월하여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소정의 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다.

5 안전표지

1 의의

○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법 제2조제16호).

1) 안전표지의 설치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또 유료도로의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의 관리자가 이를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3조제1항).

따라서 안전표지가 안전표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설치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설치한 안전표지만이 안전표지로서의 효력을 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 주민이 서로 협의하여 임의로 설치한 안전표지와 군부대장이 임의로 설치한 안전표지는 비록 안전표지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설치한 안전표지로서 안전표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설치권이 없는 자가 설치한 안전표지는 안전표지로 효력이 없음

- 권한 있는 기관이 설치한 안전표지만 안전표지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에서 설치한 안전표지가 아니라면 설치되어 있다 해도 안전표지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방도의 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한 황색점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리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앙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 「도로교통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것도 아니고 황색점선의 설치 후 관할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결국 위 황색점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895 판결

【판시사항】

건설회사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방도의 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한 황색 점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리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앙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 도로교통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것도 아니고 황색 점선의 설치 후 관할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결국 위 황색 점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다.

3) 안전표지로서의 갖추어야 할 요건

-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이 그어져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고, 노면상의 표지 이외에 따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야 비로소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716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의 의의

【판결요지】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이 그어져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고 노면상의 표시 이외에 따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야 비로소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종류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법 제4조). 그 종류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가 있다(시행규칙 제8조).

1)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시행규칙 제8조제1호). 도로사용자에게 위험이 존재해 주의를 환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표지는 표지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설물 전의 30~200미터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이 주의표지는 ① 일련번호 100번대로 부여되고 현재 제101호부터 140호까지 만들어져 있다. ② 형태는 정삼각형, ③ 바탕은 황색, ④ 테는 적색으로 만든다.

2)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시행규칙 제8조 제2호).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통행을 제한 금지하는 것으로 운전자에 준수를 요구하며, 위반하게 되면 제재가 뒤따른다. 특히 규제표지 201~211호, 227호를 위반하여 인사사고가 발생되면 중요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되어 형사처벌 된다. 이 규제표지는 ① 일련번호 200번 대가 부여되고, 현재 제201호부터 제231호까지 부여되어 있다. ② 형태는 원형, 정팔각형, 정역삼각형, 삼각형 형태의 육각형으로 만들어지며, ③ 바탕색이 적색인 정팔각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백색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④ 테의 외곽선은 모두 백색으로 이루어지며, 안쪽 테는 적색으로 만들어진다. 다만, 정팔각형은 오로지 제224호 한 개뿐이며 테가 하나밖에 없다.

3)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이다(시행규칙 제8조제3호). 이 지시표지는 ① 일련번호 300번 대를 부여하며, 현재 제301호부터 제322호까지 부여되어 있다. ② 형태는 원형, 정사각형, 삼각형 형태의 육각형으로 만들어지며, ③ 바탕색은 청색이고, ④ 테는 모두 백색으로 이루어진다.

4) 보조표지

-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시행규칙 제8조 제4호). 이 보조표지는 ① 일련번호 400번 대를 부여하고, 현재 제401호부터 제429호까지 부여되어 있다. ② 형태는 직사각형, 원형으로 만들어지며, ③ 바탕색이 백색으로 이루어지고, ④ 테는 백색으로 이루어지고, ⑤ 선 또는 사선은 흑색으로 구성된다.

5)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시행규칙 제8조제5호). 이 노면표지는 ① 일련번호 500번 대를 부여하고, 현재 제501호부터 제554호까지 부여되어 있다. ② 선에 사용되는 색채는 백색, 청색, 황색으로 구성된다. 백색은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통제한다든지 제한하는 때에 사용되며, 청색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정을 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정광정, 도로교통법규론, 2007)

3 주 · 정차 관련 안전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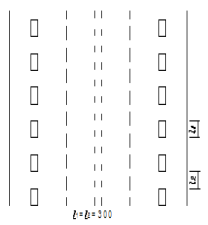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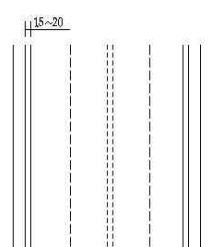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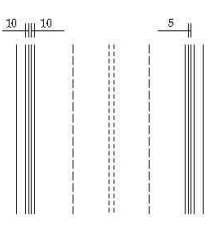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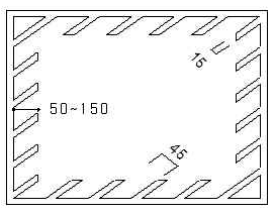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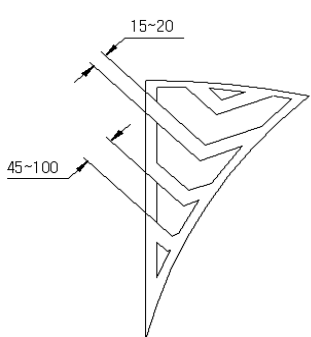
○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규제표시, “별표6”

일련번호	종 류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218	정차· 주차 금지 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300미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500미터 간격으로 중복 설치
219	주차 금지 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300미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500미터 간격으로 중복설치

○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보조표시, “별표6”

일련번호	종 류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428	견인 지역 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한 자동차를 견인하는 지역임을 표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금지표지에 부착·설치

○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노면표시, “별표6”

일련 번호	종 류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515	주차 금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3조에 따라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한 곳은 보조표지 설치
516	정차· 주차 금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및 주차를 허용한 곳은 보조표지 설치
516 의2	정차· 주차 금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524	정차 금지 지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
531	안전 지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교차로지점·노퍽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 보조표시의 개선

기존 표지판	개선 표지판		
예외적 허용시간 표시	기본형태 (시간 + 구간 지정)	요일별 요소 고려	시기별 요소 고려
			

Scaffold

-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2012. 9. 21. 개정)
 - 제4조(주차금지장소) 법 제32조제6호 및 법 제3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금지장소를 교통안전표지로 갈음한다.
 - 제5조(주·정차 금지장소의 특례)
 - ① 법 제34조의2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가 허용되는 차의 종류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한한다.
 - ② 법 제34조의2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허용 시간은 1일 24시간[출·퇴근시간대(07:00~09:00, 18:00~20:00) 제외]이며, **1회** 주차허용 시간은 최대 **30분**까지로 한다.
 - ③ 법 제34조의2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허용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와 편도 2차로 또는 편도 3차로가 결합된 도로, 편도 2차로와 편도 2차로 또는 편도 3차로가 결합된 도로 및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일방통행로 포함) 중 별표5와 같다.

II. 질의·회신

1 도로교통법 사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등 관련

질의요지

-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정차·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는지?

《‘13. 경찰청》

회신

-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정차·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3.08.14. 법제처》

버스가 정류지(停留地)에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질의요지

- 버스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본문에 따른 장소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11. 경기도 안산시»

회신

- 버스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본문에 따른 장소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11.04.28. 법제처»

주·정차 금지지역을 지방경찰청장의 고시로 가능 여부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지방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는지?

«'07. 경찰청»

회신

-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로의 해당 구간·구역 또는 장소에 같은 법 소정의 안전표지나 알림판의 설치 등과 함께 일반처분적인 성격을 갖는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07.08.17. 법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등 관련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지?

《‘12. 경찰청》

회신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라고 할 것입니다.

《‘12.07.27. 법제처》

다른 화물차량에 연결되어 있는 트레일러의 경우

질의요지

- 트레일러가 다른 화물차량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불법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 상 위반요건에 해당되어 서로 다른 두 대의 차량 각각에 대하여 주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적법 가능한 지 여부

《‘06.7.14. 영등포구 교통지도과》

회신

-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화물차에 연결하여 통상 사용되고 있어 이 경우 앞부분의 화물차와 뒷부분의 트레일러는 자동차등록번호(번호판)가 서로 다른 상태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는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고 규정(「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1대에 대하여만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됨.

《‘06.10.4. 경찰청 교통기획과》

사유지와 인접한 보도 일부 사용시 도로점용 해당 여부

질의요지

- 1층에 음식점,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 앞부분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부분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사유지와 인접한 보도 부분(소위 '인도')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의 높이(소위 '턱')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진출입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11. 민원인》

회신

- 1층에 음식점,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 앞부분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부분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사유지와 인접한 보도 부분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의 높이(소위 '턱')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진출입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07.21. 법제처》

보도와 건축후퇴선 안쪽에 걸침주차의 경우

질의요지

- 차량이 보도와 건축후퇴선 안쪽에 걸쳐 주차하고 있는 경우 불법주차로 단속할 수 있는지 여부

《'14. 광진구청》

회신

-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는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건축후퇴선 안쪽을 걸쳐 주차하고 있더라도 불법주차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14.7.8. 경찰청 교통안전과》

전세버스의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 해당 여부

질의요지

- 버스정류장내 전세버스가 정차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5.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회신

-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되며,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세버스는 버스정류소에서 주·정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1. 가. 6) 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정류소에서 주·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향시 지도·감독해야 하므로, 버스정류소에서 주·정차할 수 없음에도 전세버스가 노선버스 진입방해 등 정류소 여객운송 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는 전세버스 관할관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22호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5.12.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사도의 주차단속 가능 여부

질의요지

-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사도'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13.10.10. 강서구 주차관리과»

회신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 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도로의 개념이며, 개인 소유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공개된 장소일 경우 도로로 봄이 상당함.

주·정차 금지 장소 중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제33조제4호에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노면에 주·정차 금지 표시를 도로에 규제·심의 등 적법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음.

개인의 소유인 도로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들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곳은 공개된 장소일 경우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와 제33조제4호와 같이 교통시설물 설치 권한 있는 지방경찰청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노면에 주·정차 금지선과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는 구도 또는 시도 가 아닌 개인 소유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주·정차위반 차량은 단속할 수 있음.

«'13.10.31.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주차금지구역으로 미지정된 곳의 주차단속 가능 여부

질의요지

-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부설주차장 앞 주차장 이용불가로 주차단속 요구하는 경우, 대문 등 주출입구 진입을 어렵게 하여 주차단속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요구할 경우 불법 주차 단속이 가능한지?

《'11.8.30. 관악구 교통행정과》

회신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장소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장소(교차로, 횡단보도,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등)가 있고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로 황색 점선과 실선으로 표시된 장소가 있음.

따라서 위의 장소에서는 주·정차 단속이 가능할 것이나 이외의 장소 예컨대 「도로교통법」상 소정의 도로에는 해당하나 안전표지나 노면표지가 없는 이면 골목길에서는 단속이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관계공무원이 주차위반에 대한 이동조치를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시는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거 적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1.9.15.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자신의 집 앞 또는 사업장의 입구에 불법 주차한 경우

질의요지

-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집 또는 사업장의 입구가 막혀있어 견인해 달라고 하는 민원 전화가 많습니다. 이 경우 차적 조회 등을 통하여 소유자에게 연락이 된다면 차량 이동을 지시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난감한데 견인을 해야 하나요?

《민원인》

회신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주·정차에 대한 금지장소, 방법,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로서 제35조 내지 제36조에 의하여 주·정차위반 단속이나 견인 등의 이동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차량이 위 근거에 의하여 위반차량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통 주택가 골목길인 경우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타인의 사유지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해 놓은 경우 이를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에 타인의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이를 단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현재 사유지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을 잠시 살펴보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①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단속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적발보고를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관리부서에 연락하여 다음 절차를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타인의 대문 앞이나 사업장 앞에 주차를 하여 단속해 달라는 문의에 단속 가능 표시나 견인 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이면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의하여 시장 등이 과태료 부과권자이므로 시청 등에 통보하여 견인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면 될 것이나, 「도로교통법」 상의 주·정차금지 장소에 해당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주·정차 방법)에 의하여 주·정차시 차량 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정차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견인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 가게 앞에 주차한 경우 통행에 장애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주·정차 방법 위반에 해당 한다면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5 경찰청 교통외근기초 Q&A》

지목(地目)이 도로인 사도에 대한 주차단속 가능 여부

질의요지

- 지목(地目)이 도로이나 개인 소유의 사도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지 여부?

《‘14.8.4. 광진구 교통지도과》

회신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있는 ‘도로’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성립요건(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교통경찰권)에 해당하는 곳을 의미하며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을 말하는 것임.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에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사도라고 하더라도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금지 장소로 지정한 곳(금지 표지판이나 노면표지)이면 단속이 가능하며,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지 않은 골목이나 이면도로는 주차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할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주·정차시 차량 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정차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속 가능.(근거 : ‘14 경찰교육센터실무교재 03 ‘교통외근실무, 경찰청 발행)

「도로교통법」 상 ‘도로’는 사도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는 도로에 해당하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다른 교통에 방해할 초래했을 경우에 단속은 할 수 있으나, 단속에 앞서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 명령을 하는 등 현장 단속요원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 후 단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8.3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미승인 된 도로의 주차단속 가능 여부

질의요지

- SH공사에서 시공 중인 마곡 1지구(1~7, 14~15단지)가 완공 마무리 단계로 아파트 주변 도록에 대한 공사 및 입주 문의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기존 입주민들의 민원 발생, 마곡 1지구 주변 도로는 노선 31개, 길이 6,838m, 지하철 2개 노선으로 미승인 된 도로로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어 단속민원 발생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임. 미승인 된 상태에서 개통된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지 여부

《‘14.8.7. 강서구 주차관리과》

회신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 규정에 있는 “도로”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성립요건(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교통경찰권)에 해당하는 곳을 의미하며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을 말하는 것임.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34조에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금지 장소로 지정한 곳(금지표지판이나 노면표시)이면 단속이 가능하며,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지 않은 골목이나 이면도로는 주차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할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주정차 방법)에 의하여 주·정차시 차량 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정차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속 가능.

《‘14.8.12.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공원내 주차금지 및 견인표시가 설치된 도로일 경우

질의요지

- 국립공원내 “주차금지 및 견인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과 「자연공원법」 제60조제1항제1호 중 어느 법을 적용하여 단속(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는지?

《‘99.1.16. 서울시 주차계획과》

회신

- 국립공원내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법규가 「도로교통법」과 「자연공원법」으로 경합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정황(일상적인 교통소통 혹은 공원관리상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처벌법규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다만,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중처벌은 할 수 없음.

《‘99.1.21. 환경부 자연공원과》

- 가. 국립공원내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교통소통이니 공원 관리상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처벌법규를 결정해야 하겠으나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중처벌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나. 「자연공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 내의 관리는 공원 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5조에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공원 내에서의 주차위반에 대하여는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자연공원법」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자연공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99.2.2. 경찰청 교통기획과》

「도로교통법」상 스티커의 사전통지서 가능 여부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의 ‘스티커’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상 사전통지서인지?

회신

-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법이 우선 적용되고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부과절차규정은 질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 시장 등은 동법 제160조 제3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 동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견인될 수도 있는데, 만약 자동차가 견인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별지 제9호 서식)표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별지 제158호 서식) 표지를 부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지(이른바 ‘스티커’)는 과태료부과에 관한 한 질서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3조가 규정하는 사전통지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질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스티커’에는 “의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안내에 따라 ‘스티커’의 부착에 대해 당사자가 진술한 의견을 질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서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면 당사자는 자진납부감경혜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당사자가 ‘스티커’부착에 대해 의견을 진술했다더라도, 이후의 사전통보서의 의견 제출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티커’의 부착은 현장 단속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마련한 별개의 절차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는 질서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행정청은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질서법 시행령 제3조의 각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사전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5호 서식은 따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법무부》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사례

「도로교통법」과 질서법의 관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도로교통법」의 관계

회신

- 질서법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도로교통법」과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법무부》

고의 또는 과실 및 위법성의 착오

질의요지

- 과태료 부과에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심판청구기간 동안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법률 자문을 거쳐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 따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객관적인 법규위반 사실 이외에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근거법률에 관한 위헌확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심판대상 법률은 여전히 유효한 점, ②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동안 공권력 행사 등의 근거가 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당시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질서법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본 사안에서, 당사자인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내부 법률자문을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부과금 납부를 유예한 것이므로 위법성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되는 경우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행위자에게 자기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3.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8.2.28. 선고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행정청 등의 결정, 회신, 답변, 공문 등을 받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도1814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확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심판대상 법률은 여전히 유효하고, 당사자의 법적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법률자문을 거친 것만으로는 질서법 제8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법무부》

법인의 질서위반행위

질의요지

- 회사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인지,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 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의무위반(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무위반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즉, 과태료는 법 위반행위자에게 부과 처분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과태료 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과태료는 법 위반행위자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법률에 의해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면 그 과태료를 법인이 체납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회사의 재산이 아닌 법인대표자 개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법무부》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법인 대표자의 책임

질의요지

- 만약 법인이 법률상의 의무자인 경우, 과태료를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당해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인 이상,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질서위반행위에 그 대표자도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따라 그 대표자에게도 별도의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법무부》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질의요지

-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반복할 경우, 각 위반행위시마다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를 적용하여 1개의 과태료만 부과해야 하는지?
(질의 1)
-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범한 경우, 질서법 제13조 제2항의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는지?(질의 2)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1개의 질서위반행위는 1개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따라서 '1개의 질서위반행위'는 하나의 행위인 것이 원칙이고, 1개의 과태료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수개의 행위로 종류가 다른 수개의 법률상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수 개의 질서위반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서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이른바 실체적 경합)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가 있었으나 그것이 종류가 다른 수개의 법률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수개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질서법 제13조 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상상적 경합)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합니다.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경우, 즉 동종의 법률상 의무 위반을 수회 반복한 경우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단일한 의사에 따른 행위의 단일성과 침해된 법률상 명령규범 위반행위의 동일성에 따른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1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1개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범한 경우에는 단일한 의사에 따른 행위의 단일성과 침해된 법률상 명령규범의 동일성이 있겠지만,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각 과태료를 병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법무부》

법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대표자 주소로 송달 가능 여부

질의요지

- 법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및 체납시 독촉장을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에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과태료 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의무위반(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무위반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즉, 과태료는 법위반행위자에게 부과 처분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과태료 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법 위반 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과태료는 법 위반 행위자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법률에 의해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면 그 과태료를 법인이 체납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회사의 재산이 아닌 법인대표자 개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주소가 불명하고 폐업하여,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주소지로 과태료를 고지하고 체납시 독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법무부》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해산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르면 법인은 해산이 아닌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에 대한 처분이 무효인 것처럼 청산이 종결된 법인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산 후 청산 종결 시까지, 본래의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민법」 제81조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법무부》

의견제출 기간 이후 당사자의 상당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질의요지

- 사전통지시에 정해진 의견제출 기간 경과 후 당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의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해진 경우 적법한 처리방법

회 신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 원인,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 하여야 하고,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 제16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만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통지절차’는 당사자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줌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면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질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처분하면 될 것이고, 또다시 변경된 사항으로 사전통지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통지절차에서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해진 경우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심사하여(이른바 중간심사) 그것이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유선상 확인한 결과 본 사안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있어서 행정청의 과태료사전통지에 대하여 부과대상자인 렌트업체가 대여자동차이용자가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부과 당사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해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미 행하여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은 같은 법 제161조제2항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제3호),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4호)에는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반 당사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법무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차량 공동명이자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이 된 차량 공동명자에게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 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행정질서벌이며,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 또한 실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고용주 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의 법률상 소유자인 차량 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량 명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 대상여부도 차량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사안처럼 차량명의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공동명의로인 경우에는 행정질서벌로서 의무위반자가 여럿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자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각자가 과태료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이른바 부진정연대책임)

따라서 공동명의로자 중 1인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명의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남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법무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금액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의 요건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의 법적 의미

회신

- 질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고, 그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일 것’을 번호판 영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는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동일성 또는 위반행위의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행·관리 관련 과태료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같은 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전부 합산해야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 되거나,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만으로도 부과 받은 과태료의 합산 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항 제1·3호의 요건인 합계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고, 그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라는 요건은 갖추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결국, 질의 예1)과 같이 여러 행정청이 각각 부과, 징수, 관리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합산이 30만원 이상이거나, 질의 예 2)와 같이 과태료 부과기관에 상관없이 한 개의 차량에 부과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위반 과태료의 합산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모두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고, 그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라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법무부》

마포구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

《2016. 3. 법무심의관실》

1] 개요

- '15. 10. 마포구에서 요청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입차량 압류해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검토
- (질의 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58조(압류금지)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압류된 지입차량의 압류를 위 조문을 근거로 해제하여야 하는지?

2] 검토의견

- '14. 5. 28. 화물자동차법 제58조가 개정되어 '14. 11. 29.부터 세금 또는 벌금·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 외에는 「화물차량에 대한 위·수탁 계약 체결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이하 '지입차량')의 압류가 금지되었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압류금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법 제58조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을 압류하였을 경우 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그 압류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할 것임
- 다만, 행정처분의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행정처분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법 개정으로 압류가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 전 압류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도 그 거부처분을 한 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화물자동차법 제58조 관련, 법 개정시 위 규정의 소급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정규정은 개정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법 시행일인 '14. 11. 29. 이전 이루어진 지입차량의 압류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11. 29. 이전 이루어진 지입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법률 제12707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위·수탁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 및 위·수탁계약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수탁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수탁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한편,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의 사례편(266쪽, 355쪽)의 내용은 질의한 사안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에 대한 법령해석

《2012. 2. 법무부》

① 질의 요지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이 과태료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② 회답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이유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56조제1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같은 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서는 차가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차가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둘째,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호)이거나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제2호) 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시장등은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등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차가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와 고용주등이 동일인으로 밝혀졌다면 이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로서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장등은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한 후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

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를 종합하여 볼 때, 과태료부과 이전 또는 이후에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졌다면 운전자와 고용주등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서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2조에서 범칙행위란 같은 법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을,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같은 법 제163조에서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 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등이 과태료부과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결과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와 차주가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 및 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보받음으로써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였다면, 경찰서장은 같은 법 제162조·제163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자진납부 감경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2009. 9. 법무심의관실》

① 검토내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의견제출을 자진 철회한 시점에 의견제출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자진납부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기존 법령해석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에 이의가 없는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임
-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과태료를 감경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사례와 같이 사전통지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경우에는 자진납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 감경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어떠한 의견이라고 제기하기만 하면 무조건 자진납부감경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과태료의 납부와 관련한 단순한 질의를 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남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함으로써 자진납부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③ 변경된 법령해석

-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집 제62쪽,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집 개정판 제70쪽.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위와 같은 해석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문언에 더욱 부합하고,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금액과 자진납부시 감경된 과태료 금액을 동시에 기재하고 있는 행정청의 실무 방식에 따른 국민의 신뢰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진납부 감경에 대한 질의검토

《2009. 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① 질의 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이하 '질서법')에 의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쟁점 1)
- 질서법 제18조 자진납부감경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 등 감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쟁점 2)
-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행정청에서 총괄적으로 감경범위를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쟁점 3)
- 개별법상 감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질서법 제18조에 의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쟁점 4)

② 검토 의견

【쟁점 1】

- 질서법 제18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질서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함
- 질서법은 제2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과태료에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징수조례를 정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자진납부감경규정이 적용됨

【쟁점 2】

-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자진납부감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별법령, 행정규칙, 조례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법집행을 위해 바람직함
- 그러나, 감경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자진납부감경을 하는 것이 가능함

【쟁점 3】

- 자진납부감경시 감경기준을 어떠한 형식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서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법상의 감경기준을 규정하는 형식을 참고하여 시행규칙, 예규·훈령 등 행정규칙, 조례 등의 형태로 자진납부자 감경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질의상의 내부방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행정규칙’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내부적 효력(행정규칙의 준수 의무, 위반시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며, 행정규칙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하는 경우 그 외부적 효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쟁점 4】

- 자진납부감경은 과태료의 자진납부를 이유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감경이 ‘자진납부’를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자진납부감경과 중복적용 될 수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2009. 2. 법무심의관실》

① 질의 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자료제공 요청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등'에 금융감독원이 포함되는지, 제공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체납자의 금융정보가 포함되는지(질의1)
- 체납자의 금융정보 제공요청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지(질의2)
- 금융정보 제공요청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서 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한지(질의3)
- 행정청이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질의4)

② 검토 의견

가. 질의1에 대한 검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금융감독원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이 공공기관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나 내용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응 체납자의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나. 질의2에 대한 검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제4조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동법 동조 제2호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적시하고 있음
- 그렇다면,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제2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동법상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를 근거로 행정청이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해당기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다. 질의3에 대한 검토

- 위 질의 2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함

라. 질의4에 대한 검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행정청은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전주덕진경찰서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

《법무부》

① 요지

- 시장등은 행정청이 아닌 일반인이 제출한 영상기록매체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와 당해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부착한 증거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

②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① 시·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시·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조치를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0조 (과태료)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86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주차위반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사실을 직접 적발·단속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해당 차를 촬영한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해당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의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존에 관하여는 제88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 위반사실을 적발·단속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해당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의하여 해당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의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전에 관하여는 제88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8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등"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고,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5조(단속대장 등) ③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토 내용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단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제출한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차가 제5조, 제32조부터 제34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나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명문규정(법 제4조의2)을 두고 있는 것 이외에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의 구체적인 의미나 촬영방식 및 절차, 한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하여 단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제출한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의 입증이 충분하면 이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임

1)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며, 실무상 차량등록원부상에 기재된 차량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과태료 부과권자인 시장 등은 일반인이 제출한 영상기록매체와 함께 여러 가지 추가 증거 및 위반행위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보완·종합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것임
-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부착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추정차 관련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은 시장 등이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 자료를 갖추고,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도록 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 한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87조의2와 종합해보면, 시장 등이 직접 단속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가 필요하나, 일반인이 제출한 영상기록매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부착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동 규정상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자료의 예시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이 제출한 영상기록매체 역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이 제출한 영상기록매체만으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권자인 시장 등은 여러 가지 추가 증거 및 위반행위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보완·종합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것임. 끝.

국내 문헌

- 고영남·박선영, 상담심리의 이론과 적용, 2013, 양서원
- 방극봉, 道路交通法上 '道路'의 意味, 2000, 법제처
-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2011, 법문북스
- 정광정, 도로교통법규론, 2007, 배문사
- 류시균, 불법주차 문제의 해법, 2013, 경기개발연구원
- 최인수·전대욱, 불법 주정차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고객만족매뉴얼(2008, 행정안전부)
- 고충민원응대매뉴얼 「소통의 달인」 (2013, 서울특별시)
-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2013, 행정안전부)
- 교통외근기초(2015, 경찰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15, 법무부)
- 특이민원 대응방안(2014, 안전행정부)
- '15/'16년도 교통지도분야 단속공무원 직무교육자료(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인터넷 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http://blog.naver.com/yeajipark>
- 위키백과 한국어판, <https://ko.wikipedia.org>
- <http://www.takashimaya.co.jp>
- <http://blog.naver.com/dodreamkr>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언론 보도

- 충청투데이, 2015. 11. 10.字 기사
- 연합뉴스, 2015. 10. 28.字 및 2014. 05. 25.字 기사
- 한국일보, 2015. 09. 09.字 기사
- 동아일보, 2013. 01. 02.字 기사

“우리의 한마디, 시민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서울특별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법령·민원 사례집

감 수 : 교 통 지 도 과 장 김 정 선
 주차질서개선팀장 이 정 기
편 저 : 담 당 주 무 관 김 근 희

2016년 3월 일 인 쇄
2016년 3월 일 발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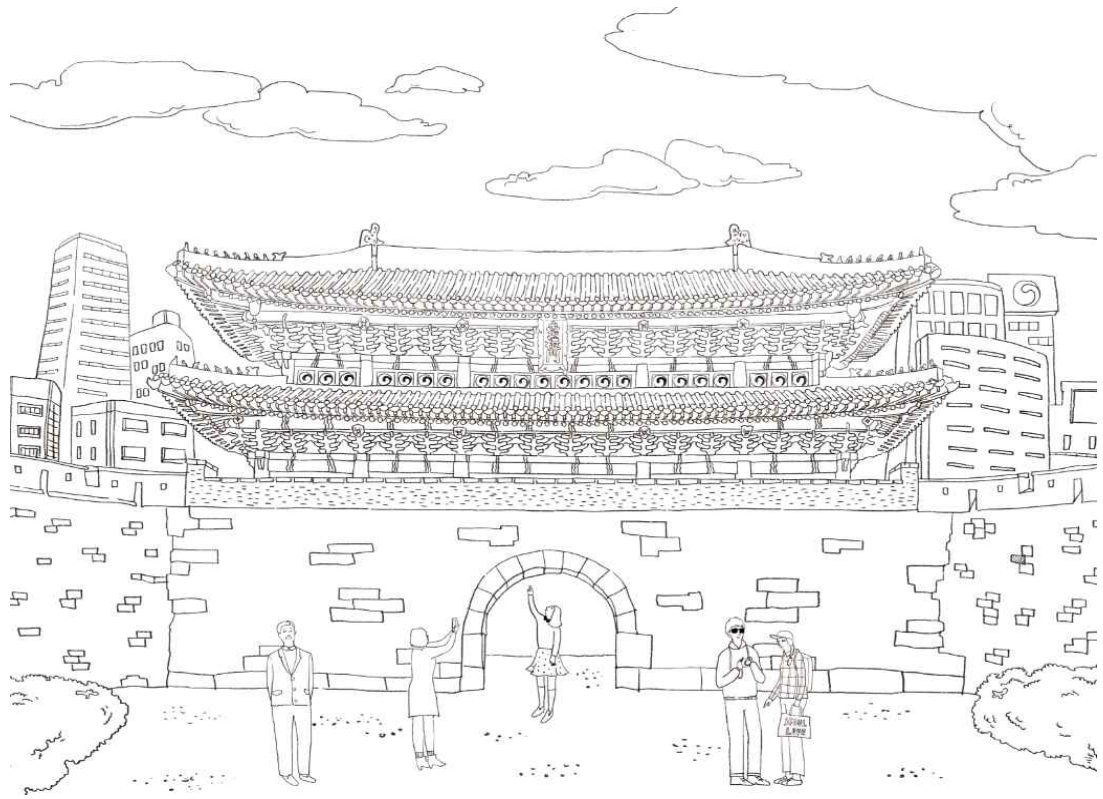
발 행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비매품)

※ 본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아래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2133-4563)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